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회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회계관리의 투명성·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6~7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삭제

나. 결산검사의견서 공개강화(안 제10조)

현행규정은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중이나, 결산검사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절차이므로 그 결과인 의견서를 상시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단체 및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입규정 정비(안 제16~17조)

1) 이월금의 경우 다음연도 집행을 위해 그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

하고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

2) 위 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기한
(출납폐쇄 후 80일)으로 명확하게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1개월 이상 공고”를 “공개”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9조 본문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

나. 지방채 발행을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

제17조의 제목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이입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을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지급이 불가피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비·업무추진비 및 일상경비등

제63조제2항 본문 중 “일상경비출납원”을 “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5호 중 “일상경비”를 “일상경비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u> <u>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u> <u>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u> <u>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u> <u>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u> <u>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u> <u>명하거나 위촉한다.</u> <u>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또는 고</u>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u> <u>사람</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u> <u>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u> <u>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u> <u>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u> <u>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u> <u>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u> <u>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u> <u>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u> <u>·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u> <u>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u> <u>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u> <u>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u>	<u><삭 제></u>

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호의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나 제2호의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

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개-----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자금 -----

-----.

1. 법 제19조 본문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

나. 지방채 발행을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

제17조(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

① 제16조에 따른 이입은 「지

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

-----.

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u>일상경비</u> 지급에 관한 사무 6.·7. (생략) ② (생략)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일 <u>상경비등</u>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76